

##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

가온전선 주식회사는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52-30(갈곶동)에 본점을 두고 있는  
주식회사 모보와 2019년 8월 8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360조의2  
및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다 음-

### 1. 주식교환의 당사회사

-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: 가온전선(주)
-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: (주)모보

### 2. 주식교환방법

- (주)모보가 가온전선(주)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하며, 주식교환일 현재 (주)모보의 주주(이하 “주식교환 대상주주”)가 소유하고 있는 (주)모보 주식을 가온전선(주)에게 이전하고,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가온전선(주)의 자기주식 22,780주주를 교부함.

(상기 교환대가로 이전되는 자기주식수는 가온전선(주)가 보유하는 (주)모보의 주식을 제외한 (주)모보의 주식이 모두 교환될 경우 교부되는 최대주식수임. 단 주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종 교부되는 자기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음.)

### 3. 주식교환비율

- 가온전선(주): (주)모보 = 1: 0.0097307

#### 4. 주식교환일

- 2019년 10월 15일

5. 가온전선(주)는 (주)모보와의 주식교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

####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(1) 행사절차: 2019년 8월 22일(주주확정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, 금번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(양식1 참조)를 제출함.

(2) 제출기간: 2019년 8월 22일 ~ 2019년 9월 6일

(3) 행사방법 및 장소

① 명부주주: 2019년 9월 6일까지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(금정동) 13층 자금팀에 제출함. (연락처: 031-8068-3960)

② 실질주주: 2019년 9월 4일까지(명부주주보다 2영업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함. (단,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증권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람.)

(4)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360조의10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(5)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, 정식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 다만, 이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가온전선(주)는 주식교환 절차를 중단하고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.

2019년 8월 22일

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(금정동)

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재 인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 인

양식1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9년 월 일

주소: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
성명(회사명 및 대표자): (인)